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책임 김 미 정 (본원 연구위원)

연구 지원 이 지 선 (본원 위촉연구원)

연구 기간 2016. 2 ~ 4

▣ 발 간 사 ▣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다양한 보육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어린이집 수가 양적으로 급증하였고 평가인증제도 등의 도입으로 질적 수준도 높아졌으며,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계층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2015년 한 해 보육예산은 국비, 지방비를 모두 합쳐 2조8천9백억 원이 넘는 규모이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의 12%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등 누구도 보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될 때마다 부모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봉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육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선생님들의 사기는 더욱 더 저하되고 있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부모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의 출구를 마련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시범사업추진기구인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담긴 운영 매뉴얼의 세부 내용은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라 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행정통계자료 제공과 논의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기도 보육정책과 이순남 과장님을 비롯한 보육정책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문

회의에 참석하여 귀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보육진흥원 이승희 선생님,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미정 컨설턴트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착수와 중간보고 단계에서 세심하게 자문해주신 이기동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과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박사님, 그리고 양정선 가족행복정책부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부자문회의 등에 참여해주신 보육분야 연구위원들, 그리고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고순자 단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짧은 기간 동안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시범운영에 필요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느라 애쓴 연구책임자 김미정 연구위원과 이지선 위촉연구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결과가 경기도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 목 자

Abstract

Development of the Operating Manual for Childcare Centers to Execute the Expansion Project for Public Childcare in Gyeonggi Province

Kim, Mi Jeong

In order to seek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childcare-centered environment and develop the public childcare model combining sustainability and publicness, Gyeonggi Province is planning to carry forward a demonstration project for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care in 2016, which is specifically appropriate for the provi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he work manual for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subject to the demonstration proje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oject to expand public childcare. For such a purpose, the project pla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care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work manual for each project related to public childcare have been reviewed, while the operating manual (proposal) for the project to expand public childcare in Gyeonggi Province has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care appropriate for Gyeonggi Province, public organizations in Gyeonggi Province take over (or take on lease) private childcare centers and support the operating expenses, while taking care of the whole operation and the quality management process. The government of Gyeonggi Province, the public childcare demonstration project division of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the primary local authority, and the childcare centers subject to the demonstration project are involved in the system for carrying forward the demonstration project.

The targets subject to the project are the private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the towns and districts without any public childcare center established within the city or county that has a low establishment rate of public childcare centers. From the facilities applying for the project with fundamental requirements satisfied, the childcare centers for the demonstration project will be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inquiries about the opinions of the primary local authority, an actual inspection on-the-spot, and a review process carried out by the public childcare policy advisory committee. The daycare fee applied by the childcare center subject to the demonstration project is the same as the unit cos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Every month, the operating expenses and the personnel expenses for cooking are support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hildcare center.

The Gyeonggi Province-styled public childcare centers pursue the values of publicness, transparency, openness, and safety, while aiming at the open childcare center with its emphasis on infants, play, and environment-friendly childcare. The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e-styled public childcare center is separately selected by the public childcare demonstration project division through open recruitment. In the case of childcare teachers, the employment of those who are working at the time for the selection of the demonstration project is to be succeeded. However, it is required for them to take the preliminary work training and participate in the annual work training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lso,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carry out quali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consisting of the childcare process consultation, the accounting consultat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while executing a survey for the level of satisfaction shown by the parents and by the evaluating session for operating achievements.

As the future improvement tasks to push forward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the expansion of the Gyeonggi Province-styled public childcare centers, the improvement plan to obtain stability for the project, the introduction of the accounting supporting system, the plan to improve the level of treatment for the childcare teachers, and the securement of mid- to long-term finances have been proposed.

연구 요약

1. 서론

- 2015년 12월말 현재 경기도 내 영유아 수는 862,159명이며, 이 가운데 45.2%인 389,398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경기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는 12,689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4.7%,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91.8%를 차지하여 보육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도는 민간중심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공보육 모델 개발을 위하여 2016년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계획 및 공보육 관련 사업별 업무매뉴얼 검토
 -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구성
-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행정통계자료 분석
 - 심층면접
 -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무원 간담회 개최

2. 선행연구 검토

- 보육의 공공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와 이용에 있어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생산과 공급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안현미 외, 2007)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재정과 보육공급 측면에

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백선희, 2011)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이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어 왔음.
- 공공형어린이집 시행으로 유아 보육료 감소, 재정 상황 개선, 교사 급여 수준의 소폭 상향 등의 긍정적 성과가 이루어진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서류 업무 등 교사 업무량의 다소 증가, 부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등이 지적되었음(서문희 외, 2011). 공공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운영비 지원 수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선정기준, 운영 기준, 사후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됨(서문희 외, 2014).
- 유해미 외(2015)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교사에 대한 신뢰도 등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음. 향후 운영방향 및 발전방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목표를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로 명확하게 할 것, 이용비용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지역별 고른 선정으로 지리적 접근성 격차 해소, 선정 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 강화, 비용 규제를 위한 특별활동 관리 강화,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 의무화, 사후품질관리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유형 간의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안현미와 김송이(2011)는 서울형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적 높은 접근성, 기타 필요경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접근성 개선효과 미흡, 월 급여에서 보육교사의 경력 미산정 문제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급간식 위생의 개선, 낮은 시설 안전 수준,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립 등을 지적하였음.

- 서울시는 민간의 시장지배력을 방어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0%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5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을 발표함. 서울시 국공립 확충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 보육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성과가 높고, 어린이집 운영의 정보공개성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됨. 지역적 균형 및 접근성은 매우 긍정적이나 자치구별 격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위탁제 전문성 및 책무성 담보 구조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대상의 포병성 측면에서는 취약보육 활용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서비스 질에 있어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충족되고 있는 반면, 근로환경에서 보육교사의 휴가 사용 등이 저조하였음(안현미 외, 2015).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유사하지만, 공공기관이 운영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다름. 운영비 지원 기준에 있어서 공공형어린이집과 유사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따르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과 구별됨.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공공성과 투명성, 개방성, 안전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므로 기본적인 운영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다른 공보육 관련 사업들과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함.

3. 공보육 관련 사업 매뉴얼 검토

-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은 100점 만점의 기본점수(평가인증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와 최대 16점의 가점 항목, 최대 9점의 감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 지급, 운영시간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 등임. 운

영비 지원기준은 그간 정원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왔으나, 신규선택어린이집에는 종일반 1개당 35만원의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반당 60만원, 재원아동 1인당 1만5천원의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함.

- 서울형어린이집의 선정은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시설 가운데 기본요건, 현장실사, 자치구평가, 공인심의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시설을 3년간 공인함. 서울형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며, 맞춤(취약)보육 1개 이상 실시,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등을 준수해야 함. 이 같은 운영기준을 준수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함.
- 서울시 국공립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국공립 전환시 승계된 보육교사는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 및 평가를 익년 2월말 또는 전환후 6개월 이내에 통과해야 함.

4.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민간 중심의 경기도 보육환경에서 경기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함.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추진체계에는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기초자치단체, 시범어린이집이 관여함.
 - 도 보육정책과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신청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의견조회 관련 행정 지원, 시범사업 대상시설 결정 및 기타 행정 지원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 신청접수, 현장실사 주관,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시범사업대상시설 협상 및 인수계약, 변경인가,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품질관리
 - 관할 기초자치단체 : 신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항 확인 및 의견조회 회신, 현장실사 협조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안내,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

□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하위권인 시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함.
- 기본 요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의견서, 현장실사,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어린이집을 선정함.

□ 운영비 지원기준

- 매월 임차료와 운영비,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운영비 : 공공형어린이집 종전 기준을 준용하여 정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취사부 인건비 : 영유아 현원 40인 미만 시설 60만원, 40인 이상 시설 90만원 지원

□ 회계관리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함.
- 연간 수입지출예산서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원장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입 및 지출 행위를 하여야 함.
- 매월 보조금 신청 전 회계자료에 대하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보고 및 회계 컨설팅 실시

□ 보육료 등의 수납

-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하며, 추가보육료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 필요경비는 도와 시군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되, 부모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안전성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친환경 보육, 열린어린이집 운영’ 을 지향함.

□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1개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함.

□ 열린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이란 물리적 공간 구성 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뜻함.
- 개방적인 보육환경, 부모 공용공간 설치, 부모참여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및 보육계획 반영, 다양한 창구를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급식관리 및 물품구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식단 사용, 급간식 식자재 및 교재 교구 등 친환경 제품 사용,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간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조직 생산제품 5% 이상 구매 등

□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 개원 초기 및 분기별 시설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실내공기질 검사와 석면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공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아동학대 의심사례 등과 관련하여 가칭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직무교육

- 원장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서 별도 공개채용하며, 보육교사의 경우 시범사업어린이집 선정 당시 보육교직원을 고용승계하되, 직무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함.
- 원장 : 총보육경력 10년이상인 자 중 선발, 어린이집 근무 전 사전직무교육 이수, 연간 20시간의 직무교육 참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수기준에 따르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가능
- 보육교사 : 시범사업 어린이집 선정 당시 재직중인 보육교사는 리모델링을 위한 휴원기간 동안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신규채용은 공채에 의하며, 어린이집 배치 전 사전 직무교육 이수, 근무기간 중 원내 교사교육 및 컨설팅에 연간 20시간 참여
- 취사부 등 기타 보육교직원 : 보육교사에 준함.

□ 품질관리 컨설팅

- 보육과정 컨설팅 : 개원 초기 학급별 1회 이상 실시, 이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 전

- 회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 따른 향상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함.
- 회계 컨설팅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과 회계컨설팅트에 의하여 상시 전화상담 및 방문 컨설팅 실시
- 안전관리 컨설팅 : 분기별 1회 실시
- 운영 성과 평가
 - 운영 성과 평가회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운영계획 대비 실적, 시범사업 운영원칙 부합성 여부, 재정 효율성, 컨설팅 결과 등을 검토하고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함.
 - 부모 만족도 조사 : 재원 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함. 조사내용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보육 철학 및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 급간식의 질, 보육비용, 부모참여 및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이며, 주요 결과를 공개하고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함.

5. 정책 제언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선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시범사업 기간의 한시성과 예산 및 임대차 방식의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적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회계관리의 편의성 제고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경기도형 어린이집 회계지원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차적으로 국공립을 비롯하여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에 시범 운영 및 개선 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전 어린이집에 확대 보급을 추진함.
-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직결되므로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 처우수준 향상과 추가인력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의 향후 확대여부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연차적 확충계획과 중장기 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별도 모색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제2장 선행연구 및 공보육 관련사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9
가.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성과	10
다. 서울형어린이집과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의 성과	12
라.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14
2. 공보육 관련 사업 매뉴얼 검토	16
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	16
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	23
다.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	27
라.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사점	30

제3장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1. 사업 개요	33
가. 사업 목적과 정의	33
나. 사업 내용	33
다. 사업 추진체계	35
2.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선정기준 및 절차	39
가. 선정기준	39
나. 선정절차	40

3. 운영비 지원 및 회계관리	41
가. 지원 기준	41
나. 회계관리 원칙	49
다. 보육료 등의 수납	50
라. 기타	53
4.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운영	54
가. 운영 원칙	54
나. 운영시간	55
다. 초과보육 금지	55
라. 취약보육 실시	55
마. 열린어린이집	56
바. 급식관리 및 물품구매	58
사.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58
5. 보육교직원 관리	60
가.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처우	60
나.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61
6. 품질관리 컨설팅 및 평가	64
가. 품질관리 컨설팅	64
나. 운영 성과 평가	66

제4장 논의 및 정책 제언

1. 논의	71
2. 정책 제언	73
가. 사업의 안정성 확보 위한 개선 방안	74
나. 회계업무의 편의성과 운영 투명성을 위한 회계지원시스템 도입	74
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75
라.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원 확보	76

참고문헌	77
------------	----

표 목 차

<표 2-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2016)	18
<표 2-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종전)	20
<표 2-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신규)	20
<표 2-4>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연수 과정	21
<표 2-5> 공공형어린이집 교사 연수 과정	22
<표 2-6>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교육	22
<표 2-7> 서울형어린이집 현장실사 지표의 구성	24
<표 2-8> 서울형어린이집 품질관리	27
<표 2-9>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교육 커리큘럼	29
<표 2-10>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커리큘럼	29
<표 3-1>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41
<표 3-2> 2016년 보육료 지원단가	51
<표 3-3> 2016년 경기도 고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51
<표 3-4> 2016년 경기도 시군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52
<표 3-5>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6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6
<그림 3-1>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추진체계	35
<그림 3-2>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선정 절차	4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영유아 인구,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규모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현재 경기도 내 영유아 수는 862,159명으로 전국 영유아수 3,187,718명의 27.0%를 차지하며, 경기도 영유아의 45.2%인 389,398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26.8%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경기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는 12,689개소로 전국 어린이집 42,517개소의 29.8%에 해당한다. 경기도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595개소로 4.7%를 차지하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평균 6.2%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4,005개소(31.6%), 가정어린이집 7,646개소(60.2%)를 합하면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91.8%가 민간시설이어서 보육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의 비율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현원의 10.0%를 차지하고, 민간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52.7%, 가정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30.7%로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83.4%가 민간시설에 다니고 있다.¹⁾

2012년 0~2세 무상보육의 도입 이후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였고, 이어 누리과정 3~4세 확대와 전계층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추진 등 보육정책이 급격히 변화해왔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1년 대비 2012년 급증한 가정어린이집은 양육수당 도입 이후 재원 영아수가 줄어들면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누리과정 확대 시행과 유보통합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운영난이 가중되는 추세이다. 2009년 이후 경기도 영유아 인구 추이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수 추이에 기초하여 2019년까지 보육 수급을 전망한 연구에 따르면, 3세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4~5세에서 유치원 취원아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2014년말 어린이집 총정원과 향후 5년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예측 인원을 비교할 때 2019년 어린이집 현원은 2014년말 총 정원의 87.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김미정 외, 2015).

1)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내부자료(2016.1.)

이미정(2009)에 의하면 보육은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수준의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익을 추구하므로 명백한 공공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와 비용은 공적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국가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공이 원하는 수준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는 공공영역이다. 양미선 외(2013)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된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보육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안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차선택으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끌어올려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등이 추진되어왔다.

경기도는 민간중심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공보육 모델 개발을 위하여 2015년 보육정책 TF 운영을 통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임차료와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보육교직원 교육, 회계관리, 보육과정 컨설팅 등 품질관리를 하는 사업방식이다²⁾. 경기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을 본원에 요청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운영 매뉴얼로 활용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2) 경기도 보육정책과 내부자료(2016.1.)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계획 및 공보육 관련 사업별 업무매뉴얼 검토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계획 등 경기도 추진계획 검토
 -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및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에 의한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등의 선정, 운영, 지원기준 등 검토
-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구성
 -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운영방향
 - 운영비 지원기준
 -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관리 세부 기준(운영시간, 교직원 채용 및 교육, 보육료 수납, 예결산 등 회계관리, 급식 및 위생 관리,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
 - 업무추진체계 등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문헌고찰 및 행정 통계자료 분석, 기관방문 및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문헌고찰 및 행정 통계자료 분석
 - 선행연구 검토
 - 보건복지부, 경기도, 서울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의 관련 규정 검토
 - 경기도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계획 검토

○ 심층면접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품질관리 기관 관계자 2인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 관계자 3인
- 각 사업별 운영 관리 및 교직원 교육 방식 등에 관하여 면접

○ 내외부자문회의 및 공무원 간담회 개최

- 정책연구 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실시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안에 관하여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실시
- 사업 주무부서인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무원, 시범사업추진단이 참여한 공무원 간담회 개최, 매뉴얼안 세부기준 검토 및 협의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설계	⇔	▷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착수보고회 개최	⇔	▷ 연구내용 및 방법 검토
3단계	문헌고찰 및 심층면접	⇔	▷ 서울형, 공공형 등의 업무매뉴얼 검토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품질관리 기관 관계자 등 심층면접
4단계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공무원 간담회 개최	⇔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안 검토 ▷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검토
5단계	운영 매뉴얼안 개발	⇔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수정 및 최종안 제안

제 2 장

[선행연구 및 공보육 관련사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공보육 관련 사업 매뉴얼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가.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³⁾

나병현(2004)은 공공성에는 서로 구분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때 공공성이란 국가가 법이나 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의 특성을 지칭한다. 둘째, 공공성에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성이란 공통의 이익, 재산, 모두에게 타당한 규범, 공통의 관심사 등을 지칭한다. 셋째, 공공성에는 누구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공공성은 누구든 접근하는 것이 거부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을 지칭한다.

표준국어사전에서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공공성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을 의미하며 공익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영영사전의 public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때 공공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개인적, 배타적이 아닌 공개된, 그리고 ‘정부가 수행하는 일’이라는 의미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장 방식이 아닌 공적 방식으로 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종해, 2005).

이미정(2009)에 의하면,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로 할 때, 사적인 영역을 넘어 대중의 공익 영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성은 국가에 의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개방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해(2005)는 보육서비스 공공성의 의미를 공적 전달체계, 공적 재정, 전달체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였다. 안현미 외(2007)에 의하면 보육의 공공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와 이용에 있어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생산과 공급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이다(안현미·김송이, 2011 재인용). 백선희(2011)는 보육의 공공성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재정과 보육공급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였다. 양미선 외(2013)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개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고,

3) 이 부분은 경기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김미정 외, 2015: 8-11)에서 재인용하여 정리함.

보육·교육 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보육과 유아교육의 가치를 공동의 이익, 공동선으로 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로 보았다. 즉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된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이 있다. 각각의 사업유형의 특징과 사업추진성과에 관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성과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대상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16).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어 왔다.

서문희 외(2011)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긍정적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유아 보육료가 감소되고,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교사 급여 수준의 소폭 향상이 이루어졌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의 부정적 측면은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서류 업무 등 교사 업무량의 다소 증가, 부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등이라고 하였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선정기준에서 평가인증 점수 강화, 보육교직원(원장 및 교사)의 수상 실적, 보육료 지원받는 아동 비율의 삭제, 비상재해대비시설 점수의 배점 강화 또는 필수 요건화, 1급 교사 비율 배점 간격 조정,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 자본 비율 강화, 시설 운영자의 단일화 및 가감점 항목 축소와 총점 항목의 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운영관리 기준 면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기준의 상향 조정, 표준보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침 준수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화,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및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비용 지원 및 수준면에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한 구간 구분 방식 및 구간별 지원액에 대한 재

고와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서문희 외(2014)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비 지원 수준을 보다 상향 조정하고, 이와 함께 선정 기준, 운영 기준, 사후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첫째, 선정제외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기준 점수 산정에서 가감점 항목 포함 여부 등 점수 산정체계를 조정할 것, 둘째, 취약보육 제공 등의 책무성 강화, 선정 이후에도 선정 기준의 지속적 준수 및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등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 마지막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 활성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정부의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운영 및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해미 외(2015)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이용비용 측면에서는 미흡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 중인데도 부모들이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용부모들의 약 80%가 해당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인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이용비용’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46.7%),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변경 의향이 있는 부모의 경우 그 사유로 ‘비용이 저렴해서’ (30.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재무구조상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의 세입 비중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해미 외(2015)는 향후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기능이 아니라,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요소의 핵심을 이루는 이용비용에 대한 개선(즉, 이용비용 규제의 강화)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는 기관유형과 기관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공공형-가정어린이집

이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그 개선 효과가 두드러짐). 넷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격을 ‘서비스 질적 수준을 담보한 민간시설’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경우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하나 ‘이용비용’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공형어린이집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고른 선정으로 지리적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것과 선정 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을 강화할 것(보수교육 관련 사항 지속 유지,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행 10% 수준 유지 또는 하향 조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정기준에서는 총점기준 현행 85점을 유지하되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심보육 부문 포괄 방안을 모색하고, 가감점 항목 비중은 점차 줄여갈 것을 제안하였다.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회계관리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시급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일차적으로 비용 규제를 위해 특별활동 관리를 강화할 것, 운영 시간 준수 강조,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사후품질관리 내실화 방안에 관해서는 자율 공부모임을 교육 시기에 따라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차별화하고 3년 이후는 집합교육과 워크숍 방식의 교육을 보육컨설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무회계컨설팅에 대해서도 지속적 강화와 함께 회계 코디네이터의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화, 제도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다. 서울형어린이집과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의 성과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유형 간의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이며, 6개월간 정원충족률 평균 70% 이상,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현장실사와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3년간이다. 해당기간 동안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 받으며,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의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는다(서울시, 2016).

안현미와 박소영(2010)은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서울형어린이집의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서울형어린이집 서비스 접근성 확대, 기타 비용에 대한 상한제 도입, ‘365일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보육 시행, 회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칙적인 교육 지원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장학제도 지원체계 구축, 지역 내 보건소 중심의 의료진(주치의 및 간호사) 협조체계 구축, 식재료 공동구매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정례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 발전 방안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제어탑 구축, “서울형 표준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체계 개발, 서울형어린이집 교사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례화,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 서울보육포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안현미와 김송이(2011)는 서울형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선 접근성 면에서 서울지역 전체 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42.1%로 비교적 접근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보육비용 접근성 면에서는 3세 이상 유아의 차액 보육료 인하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은 감소한 반면, 입학금, 특별활동비 같은 기타 필요경비는 증가하여 보육비용 접근성의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급여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준으로 개선된 한편, 월 급여에서 보육교사의 경력 미산정 문제와 초과 근무 시 시설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이 대다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미지급되는 문제점 등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급간식 위생은 개선되었으나 시설 안전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공급자 측면에서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정립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96개소를 확충하였다. 그럼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12.2% 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여 공영시설 비율이 평균 30%이상인 선진국들(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과 최대 6.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도 전체 정원의 23.7%에 불과하여 민간 부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 시장지배력을 방어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30%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5년 1월 14일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 내부자료, 2015. 1).

서울시의 국공립 1000개소 확충계획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에 있어 자치구별 재정자주도에 따라 송파,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는 85~95%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예산의 국비 분담률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여 35%로 확대 조정되었다. 확충방법에 있어서는 신축만이 아닌 민관연대, 공동주택 내 구립 의무화 및 MOU 체결을 통한 구립화, 공공기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확충함으로써 그 결과 3개년 간 공동주택 30.4%, 민관연대(기부채납 등) 30.1%, 신축 19.5%, 공공기관 내 설치 11.1%, 기타 9.8% 등으로 확충되었다(안현미 외, 2015).

안현미 외(2015)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정보공개성 및 개방성, 지역적 균형 및 접근성, 공정성 및 책무성, 대상의 보편성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국공립 확충은 보육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확충방법에 따라 재정 효율성 측면을 평가하면, 공동주택 무상임대 및 신축방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관연대-리모델링 방식, 민관연대-신축방식, 공공기관-신축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의 정보공개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역적 균형 및 접근성은 매우 긍정적 성과를 보이지만 자치구별 차이가 커 미진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탁운영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서는 위탁체 전문성 및 책무성 담보 구조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대상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취약보육 활용도가 낮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취약보육 유형 가운데 시간연장 보육의 경우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보육서비스 질에 있어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과 경력 면에서 전문성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았고, 반면 근로환경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가 사용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공간의 적정성에서 아동 1인당 면적과 보육실 면적이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보육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급간식비 및 교재 교구비에 기준보다 매우 높은 투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경기도는 한정된 보육예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자원을 활용하되 경기도의 재원과 관리체계를 통한 공보육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소유 및 관리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형태로 상시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재정 효율성을 기하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목적(김미정 외, 2015)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운영 기본원칙은 ‘영유아 중심의,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을 지향한다. 첫째, 민간어린이집에서와 같은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소유 및 관리주체를 민간개인에 두지 않고 경기도 공적기관을 통해 관리한다. 둘째, 부모에게 상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어린이집의 정보를 공개하여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물리적 공간을 개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직원과 부모, 지역사회 간 협력관계를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넷째, 회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으로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시간연장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운영에 있어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안전성의 가치를 지향한다(김미정 외, 2015).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공통적이다. 사업대상의 경우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두 유형과 유사하지만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민간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대상 어린이집 선정기준에서 서울형과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점수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반해,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설치율이 낮은 지역 특히 국공립 미설치 읍면동의 민간어린이집(김미정, 2015)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원장을 공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유형의 사업과 같이 우수시설 선정을 위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경기도의 시범사업 사업계획에 따르면 관계법령상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경우 기본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내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시범사업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품질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유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공보육 관련 사업 매뉴얼 검토

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은 지난해 하반기에 변경되어 올해부터 본격적 적용을 앞두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보건복지부, 2016)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참여 기본요건(평가인증 90.00점 이상, 6개월간 정원충족률 평균 80% 이상(농촌지역은 50% 이상), 법령 및 지침 준수)을 갖추고, 제외 사유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세부선정기준은 평가인증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지자체 특성화지표, 기타의 각 항목별로 세부 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부여하거나 가점 또는 감점 처리한다. 각 항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 평가인증점수

– 다음 산식에 따라 환산함 : (평가인증 총점-90)+25점

1) 제외 대상 어린이집 :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않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않은 어린이집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10-13.)

- 건물 소유이용 형태
 - 자가 또는 임대, 전용 또는 복합 등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점수 부여 : 자가 전용 20점, 자가 복합 10점, 관리동 10점, 임대전용 5점, 임대복합 0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2점 감점, 5% 이상 10% 미만 5점 감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전체 보육교사 중 1급 보육교사 비율에 따라 최대 25점(70% 이상, 농어촌은 50% 이상) ~ 최저 2점(45% 미만, 농어촌은 25% 미만) 부여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15년 이상 5점,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7년 미만 1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가점) :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 30% 이상(3점),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한 보육교사가 60% 이상(1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2점),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2점)
 - 맞춤형 보육지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장애아보육(3점), 시간연장보육(2점), 휴일보육(1점)
 - 맞벌이 자녀 재원율(가점):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3점 ~ 30% 이상 40% 미만 1점
 -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지자체 시책사업 참여어린이집, 급식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여 적용 가능함(4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 3점 감점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가점) : 5점 가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감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채용기준 이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한 월지급액(기본급, 제수당 등)의 6개월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식에 따라 환산(예: 월지급액 152만원 이상 지급 담임교사 수×5점 + 145만원 이상~152만원 미만 지급 담임교사 수×4점 +... 125만원 이상 131만원 미만 지급 담임교사 수×1점)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원칙 : (1순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사군구 단위로 산정)에 소재한 어린이집, (2순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표 2-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2016)

배점항목	2016			비고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점수	35점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환산점수=(평가인증 총점-90)+25
○ 평가인증 점수 90.00점~100점	25점~35점			
□ 건물소유·이용형태	20점		5점	• 배점 조정 -공동주택 內 어린이집은 전용으로 구분 •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기간: 6개월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 관리동 어린이집	10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0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2점	
○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점	• 배점 조정
○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제외	
□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8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25점			
-70% 이상(*농어촌50% 이상)	25점			
-60% 이상 70% 미만(*농어촌40% 이상 50% 미만)	18점			
-50% 이상 60% 미만(*농어촌30% 이상40% 미만)	12점			
-45% 이상 50% 미만(*농어촌25% 이상 30% 미만)	6점			
-45% 미만(*농어촌25% 미만)	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15년 이상	5점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7년 미만	1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8점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3점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 교사가 60% 이상		1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 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2점		

배점항목	2016			비고
	기본	가점	감점	
□ 맞춤형 보육지원	6점	3점		• 항목별 배점으로 조정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6점			
-장애아보육 실시	3점			
-시간연장보육 실시	2점			
-휴일보육 실시	1점			
○ 맞벌이 자녀 재원을		3점		
-50% 이상(*농어촌40% 이상)		3점		
-40% 이상 50% 미만(*농어촌35% 이상 40% 미만)		2점		
-30% 이상 40% 미만(*농어촌30% 이상 35%미만)		1점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4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3점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5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1점	• 신설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최대 5점			• 기본점수에 포함
계	100점	16점	9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43-44.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3년간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00점 이상 유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이통합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중 1개 이상 반드시 실시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2016년 기준 1,567,020원)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평일 19시30분까지 의무 운영(지역실정, 부모 협의를 이유로 단축 불가)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원장 및 교사연수,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등) 의무 참여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2015년까지 어린이집 규모, 즉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정원 20인 이하 월 116만원~정원 124인 이상 월 875만원, <표 2-2> 참조),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하였다. 2015년 하반기 중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방식 지원을 희망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표 2-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종전)

정원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월 지원액	116만원	253만원	268만원	445만원	460만원	565만원	580만원	829만원	844만원	875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32.

신규 및 재선정기관은 어린이집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최대 1,000만원). 변경된 운영비 산출기준은 종일반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아동 1인당 지원되는 교육환경개선비로 구성되어 있다(<표 2-3> 참조).

<표 2-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신규)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35만원	종일반 1개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선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시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27.

4)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품질관리단을 통해 다양한 사후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장 연수, 교사 연수, 공모전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과 재무회계 소그룹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 원장 연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연차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 자율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사업임. 각 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은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연수 과정

구분	대상	교과목	교육방법 등
기본과정	운영1년차 및 신규임용 원장	공공형 제도 안내, 공공형 원장의 역할(리더십), 영유아 권리, 어린이집 문서관리, 원내 교사 교육, 정보공개 안내, 합리적인 재무회계 운영 관리	특강 및 워크숍, 6개 교과목을 1개월 주기로 총 2차시로 나누어 개설 (차시별 6~7시간)
심화과정	운영 2~3년차 원장	보육과정의 실제, 놀이 운영, 부적응행동 지도	특강 및 워크숍, 과목별 7개 권역에 개설 (과목별 4~5시간)
자율과정	운영 4년차 이상 원장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관리, 스트레스 관리	특강 및 워크숍, 과목별 7개 권역에 개설 (과목별 4~5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37~38을 편집함.

- 교사 연수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의 연수는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함. 각 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은 다음 <표 2-5>와 같음.

〈표 2-5〉 공공형어린이집 교사 연수 과정

구분	대상	교과목	방법 등
기본과정	근속기간 및 경력 2년 이하인 일반교사	영유아 발달, 보육교사의 정체성 및 아동의 권리, 일과 운영 및 일지 작성의 실제,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강 및 참여형 강의 (1일 약 7시간 소요)
심화과정	근속기간 2년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일반 또는 주임교사	보육과정의 실제, 상호작용의 실제, 놀이 운영, 부적응행동 지도	과목별 분리 개설하여 희망 과목 신청 이수 가능, 특강 및 실습(30 명 내외 소그룹), 약 2 주 주기로 진행(3차시 교육, 차시별 약 3~4 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37-38을 편집함.

- 공모전 : 보육 및 육아관련 이슈를 고려, 주제를 선정하여 참여 희망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9~12월 중 공모전을 실시함. 심사 후 수상작 제출기관에 대한 시상과 공모전 자료집 배포.
-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과 재무회계 소그룹 교육을 실시함. 각각의 대상, 내용 등은 다음 〈표 2-6〉과 같음.

〈표 2-6〉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교육

구분	대상	내 용	방법 등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1~3년차 어린이집 (의무참여) (※4년차 이상 희망참여 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합리적 예산 운용 지원 -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증빙서류 관리 등에 대 한 재무회계 운영 현황 점검 후 피드백 제공 - 어린이집별 상황 고려한 예산안 관련 실습 진행	재무회계 코디네이터 가 어린이집을 방문,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재무회계 소그룹 교육	4년차 이상 어린이집 (의무참여) (※1~3년차 희망참여 가)	- 예산 작성의 실제 : 당해연도 예산서 작성 - 추가경정예산의 실제 : 집행예산 점검 및 추경예산서 작성 - 결산 작성의 실제 : 집행예산 점검 및 전년도 결산서 작성	재무회계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중심 진행. 3개 교과목별로 분리 하여 16개 권역에 개설 (과목별 3~4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39-40을 편집함.

이밖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전문가 인프
라 운용, 보육수요자에게 제공 가능한 전문정보 제공(예: 부모교육 소책자 등), 관계기관 교
육 및 간담회, 전산개발 및 관리, 정보공시 관리 및 운영관리체계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

서울형어린이집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서울형어린이집의 신청대상은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며,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을 득한 시설을 3년간 공
인한다(서울시, 2016). 평가지표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²⁾

- 총 배점 : 100점 ⇒ (기본요건 20점 + 현장실사 66점 + 공인심의 14점) ± 가감점사항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클린카드 통장) 사
용, 금융기관(아이행복카드, 계좌이체) 통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10% 미만 사용, 클린운영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 필수항목 중 1개 지표라도 미이행시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신규공인 대상에서 제외
- 기본요건 : 20점
 - 평가인증 점수 95점 이상 20점, 90~94점 19점
- 현장실사 : 66점
 - 평가분야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 4개분야 9개 지표(46개 항목)으로 구성(<표 2-7> 참조)
- 공인심의 : 14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적격성 및 실사자 종합 소견(4점)
 - 관할 자치구 검토의견(3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심의위원회 심의(7점)

2)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015.5). 2015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안내. 서울특별시보육포털(2016.4.7. 인출).

- 가감점 : 가점사항(+10점), 감점사항(-6점)
 - 가점사항: 자가 소유이며 기타운영비가 보육료의 10% 미만(1점),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클린카드 사용(1점), 특별활동비나 특성화비 등 부모 부담 비용 받지 않음(1점), 옥외놀이시설 기구가 영유아에게 안전함(1점), CCTV 설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모든 CCTV가 작동되며 자료 보관 상태가 양호함(2점), 맞춤형선택 또는 소그룹 자율학습모임/원내교육활동 등 연 6회 이상 교사교육 지속 실시(2점), 연 6회 이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진행(1점), 장애아 또는 다문화아동 보육(1점)
 - 감점 : (차량운행시)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미신고 운행/ 운전자가 적합한 자격소지자가 아닌 경우/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 책임자 미등승/ 통학차량내 차량용소화기나 구급상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탑승 유아수보다 개별 안전띠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탑승 영아수보다 영아용 보호장구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2점),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2점), 동일 또는 인접 건물 내 학원이나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급식, 아동 및 교사의 이동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2점)

〈표 2-7〉 서울형어린이집 현장실사 지표의 구성

분야 (총배점)	하위영역	평가지표(9)
A. 맞춤형보육 (4)	맞춤보육 서비스	A1.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보육 등 맞춤형보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B. 안심보육 (23)	시설안전	B1-1.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B1-2. 영유아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시설, 급식·위생	B2-1. 보육시설 전반이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B2-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C. 클린운영 (31)	회계 투명성	C1-1.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C1-2.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규정에 따라 수납, 관리하고 있는가?
	시설운영의 투명성	C2-1. 외부에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가정과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가?
D. 보육인력 전문성 (8)	전문인력	D1-1.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자료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015.5), 2015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안내.

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서울형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즉,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을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2016).

- 맞춤형(취약)보육(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 1개 이상 실시
-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 비상재해대피시설 적법하게 설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한 보호절차 문서화,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 철저히 하여 보호자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대책 실시,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
- 회계의 투명한 관리
 - 회계관리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회계관리,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된 결제(클린)카드 사용, 기타 운영비는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사용
 - 보육료 등의 수납 :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 필요경비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 기타 잡부금품 수납금지
- 기타 :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3)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기준 및 지원 내용

서울형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각각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2016).

-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당월 지원된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 지원

- 원장 인건비는 정부기준의 원장 1호봉 기준으로 매년 지원(월지급액(1호봉)의 80%)
-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정부기준의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 승급 적용 (영아반 교사 월지급액의 80%, 유아반 교사 월지급액의 30%, 현원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취사부(1인) 월지급액의 100%, 시간연장 전담교사/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월지급액의 80%)
- 기타운영비로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 지원(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291,660원)
- 신규 공인시설에는 환경개선비 지원(현판, 간판,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시설규모별 지원 한도액 차등)
- 처우개선비, 중식비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기준 적용

인건비 지원 시 원장의 경우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을 인정하며, 보육교사 등의 경우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 지급하되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4) 서울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서울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인 후 3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갖춘 곳에 재공인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재공인은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기본 요건, 현장실사, 실사자 종합소견, 자치구 평가, 공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종합 평가점수 85 점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한다(서울시, 2016).

- 재공인 평가심사내용
 - 기 본 요 건 : 평가인증 점수를 등급별로 반영하여 적용
 - 현 장 실 사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 실사자 종합소견 : 원장, 어린이집의 회계 및 운영의 정성적 종합의견과 점수부여
 - 자 치 구 평 가 : 행정처분 여부, 민원사항 등 운영의 건전성
 - 공인심의위원회 : 필수지표, 회계부정 및 주요내용 종합심사

서울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공인 시설에 대해 원장교육, 재무회계교육,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서울형어린이집 품질관리

구분	대상	내 용	비고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교육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안내 - 재무회계교육 등	11월
서울형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 재무회계교육	5~9월(분기별)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컨설팅	서울형 및 일반 어린이집	- 회계·급식·위생·안전·아동인권 분야에 대한 컨설팅 실시	3~12월, 모니터링단 (2인1조)의 방문 컨설팅

자료: 서울특별시(2016),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서울특별시 보육포털, 2016. 4. 7. 인출) 발췌 편집함.

다.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기준

1)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지원기준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민관연대 방식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존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에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시, 2016).

- 리모델링 비용 : 기존 어린이집 전환 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5년은 기준액의 50%), 공동주택의 경우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을 지원함. 공동주택 10년 무상임대 시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함(5년 무상임대 시 최대 3천만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비리혐의자가 운영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은 시설, 사전적격심사 결과 합계 70점 미만인 시설 등은 제외됨.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신규채용의 경우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로서 서

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소정의 교육평가과정을 통과하여 보육교사 인력 풀 내 자원으로 편입된 자 중에서 채용함. 원장의 경우 타 어린이집의 대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채용을 배제함.

2)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운영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통조건과 가정어린이집 전환시설 등에 대한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2016).

- 공통조건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평가 : 기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승계된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 및 평가를 익년 2월말 또는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통과해야 함.
 - 운영자 친인척 근무 제한, 보육교직원의 종교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결과 도출 시까지 해당 교직원 직무 정지
 - 어린이집의 귀책사유로 위탁협약 해지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
 - 위탁 운영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위탁 운영체 평가 실시, 일정점수 이하시설은 위탁 취소 가능
-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자치구 참여를 의무화 하며, 특정기업이나 종교명칭 사용을 제한함.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부모 부담 있는 특별활동 원천 금지, 신규입소아동 0~2세로 제한, 차량운행 금지를 준수해야 함.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서울시는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직원 공적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사전시험, 이론 및 실습, 종합시험 및 인성검사를 거쳐 인력풀 대상으로 확정된 보육교직원을 인력풀 DB에 등록하고, 신규 채용 시 이 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다(박은미 외, 2015).

- 원장교육
 - 교육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확정 원장(개원 전), 민관연대에 의한 전환시설 원장 (전환 6개월 이내 신청)
 - 총 10과목의 이론교육(22시간) + 회계실습(6시간) 실시

〈표 2-9〉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교육 커리큘럼

보육 공공성	보육 전문성	보육 개방성
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보육사업의 이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이해	3. 조직문화와 원장의 리더십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5. 어린이집 원아관리 6. 보육과정 운영과 지원	7.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 8. 어린이집 운영평가
		보육 투명성
		9. 어린이집 재무관리 10. 건강·영양·안전 관리

자료: 박은미 외(2015).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22.

- 교사교육
 - 교육대상 : (평일반) 현직에 있지 않고, 국공립 취업을 희망하는 교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의 보육교사
(주말반) 현직에 있으면서 국공립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교사
 - 총 10과목의 이론교육(32시간) + 현장실습(8~16시간)

〈표 2-10〉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커리큘럼

보육 공공성 (7시간)	인권 감수성 (11시간)	보육 전문성 (14시간)
보육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이해 보육사업 및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이해	4. 근로기준법의 이해 5. 아동인권 이해와 실천 6. 보육교사 셀프리더십 7. 보육교사 윤리 및 책무성 8. 보육교사 젠더 감수성	9.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① 영유아발달과 보육과정 ② 영유아보육과정 운영계획 ③ 자유선택 활동 ④ 대소집단 활동 10. 영유아 행동 지도

자료: 박은미 외(2015).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22.

라.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사점

이상 공보육 관련 사업들의 운영 매뉴얼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보육 시설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유사하다. 경기도 재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관리하지만, 설립유형상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다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이 원장을 공채하여 운영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과도 다르다. 운영비 지원 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종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형어린이집과 유사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 기준을 따르도록 한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공공성과 투명성, 개방성, 안전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므로(김미정 외, 2015),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운영시간 준수, 취약보육 실시,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급식 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다른 공보육 관련 사업들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운영비 지원기준, 열린어린이집 운영, 투명한 회계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유관 사업의 운영 매뉴얼 및 경기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공무원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3장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장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안]

1. 사업개요
2.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선정기준 및 절차
3. 운영비 지원 및 회계관리
4.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운영
5. 보육교직원 관리
6. 품질관리 컨설팅 및 평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과 정의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민간 중심의 경기도 보육환경에서 경기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이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 운영 되는 어린이집을 뜻함.

나. 사업 내용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경기도 공공기관이 인수(임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전반과 품질관리를 하는 방식의 사업임.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2016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³⁾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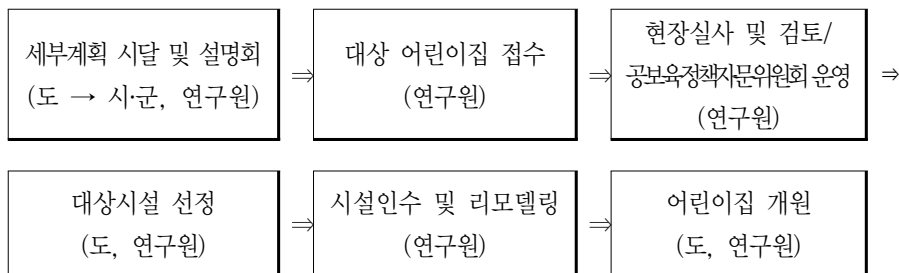
- 운영주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 확보방안 : 민간 어린이집 인수(임차) ※4개소 이내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지역 우선 추진
- 운영결과 분석 활용
 - 공보육 확충 최적화 모델 개발 및 확충
 - 우수 운영시스템을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급(노하우 공유)
- 도 보육정책과
 - 기본계획수립(선정대상 및 기준 마련), 지역설명회, 공보육 확충 지원, 관계기관 협의, 소요예산 확보, 대상시설 선정 등
- 가족여성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3) 경기도 보육정책과 내부자료(2016. 1.)

- 사업대상 실사(검토), 시설 인수 및 리모델링, 교직원 채용,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보육품질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등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설치기준 컨설팅 등

□ 인수대상 및 선정절차

- 대 상 : 민간 어린이집의 임차
- 선정방향(기준)
 - 권역별 안배(남부북부), 규모, 국공립 미설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1차적으로 수원시·의정부시를 우선 선정 추진
 -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없는 시설, 평가인증 통과,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없는 시설 등 선정
 -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도 공무원, 추진단, 보육전문가 등)
- 선정절차(흐름도)



□ 교직원 채용 및 보수

- 원장 공개채용, 교직원 승계 원칙
- 기본보수는 공공형어린이집 수준 이상 유지
 - 보육교사 : 국공립 1호봉 이상 적용 (호봉인상 방식은 별도 검토)
 - 원장 : 별도계약
 - 조 리 원 : 영유아수(현원)별 월 60만원 또는 90만원 지원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 운영시스템 및 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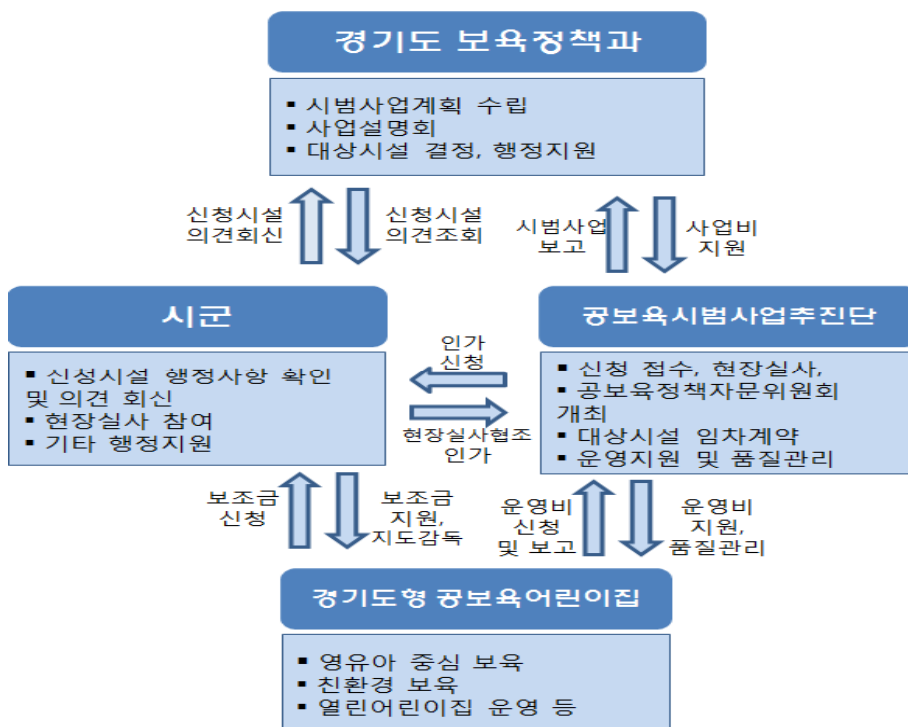
- 어린이집 급간식재료, 교재교구 등 공동구매 시스템
- 교직원 정기교육, 투명한 회계관리, 어린이집 개방 확대,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 강화
 - 공보육시범사업 추진단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16.하반기), 최적화 모형 개발 및 확대

다. 사업 추진체계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기초자치단체, 시범어린이집 간에 다음과 같은 체계로 추진됨(〈그림 3-1〉 참조).

〈그림 3-1〉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추진체계



○ 선행연구(김미정, 2015)에서 제안된 사업추진주체간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경기도 보육정책과

○ 시범사업의 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추진주체, 예산 등에 관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2016년 추진될 경기도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함.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대상, 선정기준, 선정절차, 운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안내함.
- 개최지역내 민간어린이집을 참석대상으로 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최취지 및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사업 참여 신청절차 등을 안내함.

○ 신청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의견조회 관련 행정 지원

- 도 보육정책과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시설의 신청서에 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1차 확인 및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회신한 검토의견서를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으로 송부함.

○ 시범사업 대상시설 결정 및 기타 행정 지원

- 도 보육정책과는 기초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현장실사,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추천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범사업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이를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 통보함.
- 현장실사와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며, 이밖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 지원함.

2) 가족여성연구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 신청 접수

- 시범사업 우선대상지역 사업설명회 이후, 사업 공고 기간 동안 참여 희망 민간어린이집의 신청서를 접수함.

※ 신청어린이집 신청서 기재사항 : 어린이집 연혁(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 보육교직원 현황, 시설현황(준공연도, 면적, 실별 면적 등), 평가인증, 보육교

직원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

○ 현장실사 주관

-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회신 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신청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함.
- 현장실사단 구성 : 도 보육정책과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실무자, 경기도(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등
-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 어린이집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현장실사 후 시범사업대상으로 적합한 시설을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검토에 회부함.

○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대상 시설의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함.
-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 도 보육정책과 공무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보육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함.
-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는 신청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검토의견서, 현장실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시설을 2~3배수 선별함.

○ 시범사업대상시설 협상 및 인수계약, 변경인가 등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추천 시설에 대한 인수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도에 통보하며, 도 보육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시설 인수 후 리모델링 공사 및 원장 채용, 변경인가 절차 및 개원준비를 실시함.

○ 시범사업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품질관리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시범사업 어린이집 원장의 사전직무교육을 비롯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함.
- 어린이집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연·월간 예결산을 취합함.
- 어린이집 보육과정 컨설팅, 회계컨설팅, 안전관리 컨설팅 등 방문 컨설팅을 실시함.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 개발과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별도진행.

3) 어린이집 관할 기초자치단체

- 신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항 확인 및 의견서 회신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 어린이집의 신청서 상 기재사항에 대한 행정적 확인과 의견조회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 통과 여부
 - 신청서 기재 현황의 사실 여부 확인 :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연혁,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 보육교직원 현황, 시설현황(준공연도, 면적, 실별 면적 등),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
 - 의견서 제출 : 행정처분 여부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 등(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 이력 등 특이사항을 기록함. 해당 읍면동 내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등을 검토하여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지, 시범어린이집 운영 시 공보육 수요 충족 및 지역 보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지 등을 검토함. 종합적으로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의견을 기입하여 의견서를 도로 송부함.
- 현장실사 협조
 - 기초자치단체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주관하는 현장실사에 참여하여 대상 시설의 입지여건, 시설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함.

4)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안내, 기타 관련 사업지침 및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에 따라 원아 입퇴소 관리, 영유아 보육, 보육교직원 관리, 부모참여 등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 등을 운영함.

-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며, 연간 운영계획 및 예결산을 수립,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 보고하고, 승인된 운영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함.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실시하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등에 참여하며,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으로 어린이집 운영보고 및 매월 운영비 지원을 신청함.

2.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1) 시범사업 추진지역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하위권인 시군을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하고, 해당 시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1차적인 시범사업 대상 시설로 추진함.

※ 경기도 31개 시군을 구 단위까지 나누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과 영유아 수,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현황, 정원충족률 등을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도시 규모를 고려하여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단원구, 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5개 시군구가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제안된 바 있음(김미정, 2015).

2) 어린이집 선정기준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소재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갖춘 곳이 신청 가능함. 아래 기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의견서, 현장실사,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어린이집을 선정함.
 - 기본요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 처분 받은 사항이 없는 시설(단, 시정명령은 제외), 평가인증 통과시설,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신청시설 소재 읍면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2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고 보수교육 미 이수자가 없는 곳
 (3순위) 건물의 구조, 비상재해대비시설, 아동 1인당 면적 등 물리적 환경이 양호하며
 리모델링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한 곳 등

나. 선정절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선정 절차는 다음 <그림 3-2>와 같음.

<그림 3-2>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선정 절차

구 분	사업주체	내 용
사업설명회	경기도 보육정책과	• 대상지역(시군) 민간어린이집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공고 및 신청 접수	공보육시범사업 추진단	• 시범사업 참여시설 공모에 관한 공고 • 사업공고기간 중 참여희망시설의 신청서 등을 접수(우편 및 방문)
▼		
시군 의견조회	시군 보육부서	• 경기도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신청시설 에 대한 행정사항 확인 및 의견서 제출
▼		
현장실사	공보육시범사업 추진단	• 신청서 기재사항 현장 확인, 입지여건 및 주변환경 등 종합 검토
▼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	공보육시범사업 추진단	• 시군 의견서, 현장실사보고서 등 종합검토 하여 사업대상시설 2~3배수 선별
▼		
대상시설 선정	경기도 보육정책과	• 최종 사업대상시설 확정

3. 운영비 지원 및 회계관리

가. 지원 기준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해 매월 임차료와 운영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함.
 - 임차료 : 시범사업이 민간어린이집 임차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범사업기간 동안 매월 지원하며,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함.
 - 운영비 : 공공형어린이집의 종전 운영비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어린이집의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함.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초기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원아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원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변적인 신규기준보다는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종전 기준을 적용함.

〈표 3-1〉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정원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월 지원액	253만원	268만원	445만원	460만원	565만원	580만원	829만원	844만원	875만원

- 취사부(조리원) 인건비 : 영유아 현원 40인 미만 시설 60만원, 40인 이상 시설 90만원을 지원함.
- 이밖에 국도비 또는 도비 지원에 의한 추가 지원으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키 지원, 처우개선키 추가지원, 대체교사 지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등이 있음. 각 항목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경기도, 2016).
- 누리과정 운영 지원
 -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지원내용 : 290천원(인, 월)

- 보육료 : 만3~5세 아동 1인당 220천원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0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정부미지원 법인·단체 등 포함),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교사
- 지원액

구 분	평가인증 어린이집	미인증 어린이집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월200천원/인	월170천원/인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110천원/인	월 60천원/인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

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교직원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어린이집

-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⁴⁾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제외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
임자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 지원액 : 월30천원/인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가능, 신청
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사업관리
자로서 대체교사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4)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준 준용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 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지원기준일, 지원방법 및 지원 요건 : 상동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조리원
- 지원일수
 - 단기연가(교사, 조리원)⁵⁾ : 5일 이내 연가
 - 직무교육 5일 이내, 승급교육 10일 이내
 - 1주 이상 병가(교사, 조리원), 연간 60일 이내(병가기간 동안의 휴일은 병가 일수에 포함, 입원 시에는 1주일 미만이라도 입원기간 지원)
 - 본인결혼(교사, 조리원) : 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교사, 조리원) : 5일 이내(사망진단서, 장례식 증명서 등 첨부)
 - 출산휴가(교사, 조리원) : 90일(3개월) 이내(※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도 지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워크숍」 및 「우수보육교사 힐링캠프」 참가 : 2일 이내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대표자로서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미 가입어린이집 및 4대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 월급여형 대체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5) 단기연가 증빙은 종사자관리대장 사본, 연가확인서(원장, 교사 자필서명)로 확인

- 지원내용 : 연속 10일 이내 근무 대체교사 신청자 우선 지원, 대체교사는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지원, 이전 달에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달에 차 순위로 지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 확보 e-mail 등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
- 일당형 대체교사
 - 지원기준 :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군에 지급 신청(※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신청)
 - 지원방법 :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인력풀 활용(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인건비 지급액 : 일 54,000원/인(실근무일만 지급, 교통비 포함)

○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지원액	대 상	전문교사 요건
영 아 전문교사	월50천원	- 영아반(일시보육반(0~2세) 포함) 담당교사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 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다 문 화 전문교사	월50천원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 애 아 전문교사	월100천원	- 장애아반 담당교사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근무중인 특수교사 (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제외)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치료사	- 보육교사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40시간 기 이수자 - 특수교사치료사 : 유자격자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함

- 지급기준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 간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원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제외대상 : 보조교사, 대체교사, 시간연장교사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국도비)

-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센터에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국도비)

- 지원 내용
 - 담임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체교

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지원 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2주 이내) 참석, 결혼 등 연가(주중 1~5일),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발생시 지원
-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하되, 보수교육 사유,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시 상시, 유선/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국도비)

• 사업 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지원 제외대상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지자체별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월 784천원(4시간 기준) 지급(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법령 및 사업취지를 고려, 특정반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 영아반 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
-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지원 조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 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가 특정 반 담임교사나 원장 겸 보육교사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국도비)

- 2016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 계획인원 : 18,950명(직무교육 9,430 승급교육 9,520)
 - 위탁교육기관 : 25개(보육교사교육원 10, 대학 14, 육아종합지원센터 1)
 - 교육방법 : 집합교육(특별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교육비용 : 직무 6만원, 승급 12만원, 원장사전 15만원(교재비 별도)
 - 대상자 선정기준 : 직무교육(매 3년마다 필수 이수), 승급교육 2급(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승급교육 1급(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원장사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교육비 환급 주의사항
 - 직무교육 교육비 우선 환급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여야 함
 - 대상자 전출 시 · 군은 전입지에 공문 통보하여 환급대상에서 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 회계관리 원칙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지출 관리는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수입과 지출 행위 시 수입, 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에 기록하고 관련 근거 서류(청구서, 영수증, 지급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1차 작성하고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의 승인을 거쳐 확정함.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정부 회계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행위를 하여야 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전 당월 수입, 지출 항목 등 회계자료와 보조금 신청에 관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 보고 및 컨설팅을 의뢰하고,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의 회계자료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육통합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 전송함.

다. 보육료 등의 수납

-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보육시설이므로, 보육료는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하며, 만3~5세의 경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추가보육료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
- 필요경비는 도와 시군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수납하여야 하며, 가급적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함.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특별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부모 과반수의 요구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특별활동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함. 이밖에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음.
- 보육료 등의 수납은 아이행복카드, 무통장입금,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며 수납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수납영수증을 발행하고, 원장은 수납 보육료 등을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 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이에 대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를 처리하여야 함. 2016년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와 경기도 고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표 3-2〉 2016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418,000	418,000	627,000
		만1세	368,000	368,000	552,000
		만2세	304,000	304,000	456,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 다만, II.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 '1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288.

〈표 3-3〉 2016년 경기도 고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납부내역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100,000원 * 총 한도액 내에서 시군에서 세부한도액을 정함.
차량운행비	월 20,000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항목별 수납한도액을 결정함. 다만, 가급적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

〈표 3-4〉 2016년 경기도 시군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 원)

구분	입학준비금		특별 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수납주기	연	연	월	분기	월	연	월(/식)	월
수원시	7,000 (미수납 결정시 피복류에 포함)	93,000	60,000	90,000	20,000	204,000	104,000 (2,000/식)	45,000
성남시	0	100,000	68,000	99,000	20,000	300,000	(1,500/식)	25,000
용인시 (정부지원)	7,000	93,000	68,000	78,000	20,000	132,000	60,000 (1,500/식)	15,000
용인시 (민간,가정)	7,000	93,000	68,000	123,000	20,000	240,000	60,000 (1,500/식)	40,000
부천시	4,000	96,000	65,000 (3과목이내)	120,000	20,000	240,000	60,000 (1,500/식)	40,000
안산시	0	100,000	68,000	114,000	20,000	240,000	34,000 (1,700/식)	35,000
안양시	0	100,000	70,000	105,000	20,000	300,000	(2,000/식)	40,000
화성시	5,000	95,000	75,000	105,000	20,000	204,000	(1,500/식)	45,000
평택시 (시립)	5,000	95,000	40,000	<u>월30,000</u>	20,000	<u>월15,000</u>	(2,000/식)	20,000
평택시 (민간,가정)	5,000	95,000	60,000	<u>월40,000</u>	20,000	<u>월15,000</u>	(2,000/식)	30,000
시흥시	5,000	95,000	65,000	105,000	20,000	<u>월20,000</u>	30,000 (1,500/식)	30,000
김포시	0	93,000	60,000	165,000	20,000	159,000	156,000 (3,000/식)	40,000
광명시	시 일괄 가입	100,000	70,000	90,000	20,000	120,000	(1,500/식)	30,000
광주시	0	100,000	80,000	120,000	20,000	180,000	30,000 (1,500/식)	40,000
군포시	100,000 (도 결정 미준수)		70,000	90,000	20,000	240,000	(1,800/식)	50,000

(계속)

구분	입학준비금		특별 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수납주기	연	연	월	분기	월	연	월(/식)	월
오산시	6,000	0세 64,000 1세이상 94,000	66,000	105,000	20,000	216,000	(1,900/식)	30,000
이천시	0	100,000	70,000	90,000	20,000	180,000	30,000 (1,600/식)	40,000
안성시	0	100,000	60,000	100,000	20,000	250,000	40,000 (2,000/식)	30,000
의왕시	100,000 (도 결정 미준수)		75,000	120,000	20,000	120,000	30,000 (1,500/식)	35,000
하남시	10,000	90,000	78,000	120,000	20,000	240,000	30,000 (1,500/식)	35,000
여주시	0	100,000	70,000	75,000	20,000	115,000	(1,400/식)	35,000
양평군	0	100,000	70,000	105,000	20,000	200,000	30,000 (1,500/식)	40,000
과천시	0	100,000	70,000	90,000	20,000	240,000	(1,500/식)	20,000
고양시	5,000	95,000	70,000	<u>월45,000</u>	20,000	<u>월20,000</u>	(2,000/식)	50,000
남양주시	0	100,000	80,000	90,000	20,000	180,000	60,000 (1,500/식)	50,000
의정부시	0	100,000	62,000	120,000	20,000	170,000	(1,500/식)	42,000
파주시	5,000	95,000	70,000	135,000	20,000	240,000	(1,200/식)	40,000
양주시	10,000	90,000	65,000	135,000	20,000	186,000	(1,350/식)	43,000
구리시	10,000	90,000	80,000	90,000	20,000	180,000	67,600 (1,300/식)	50,000
포천시	10,000	90,000	70,000	100,000	20,000	220,000	(1,000/식)	30,000
동두천시	10,000	90,000	70,000	<u>월30,000</u>	20,000	<u>200,000</u>	(1,200/식)	45,000
가평군	0	100,000	60,000	<u>월25,000</u>	20,000	<u>월15,000</u>	45,000 (1,125/식)	45,000
연천군	10,000	90,000	70,000	85,000	20,000	240,000	35,000 (0~2세 1,746/식) (3~5세 2,000/식)	50,000

자료: 경기도(2016). 2016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p.172-173.

라. 기타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지출은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지출 시

관련서류(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4.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운영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이 매뉴얼안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일반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가. 운영 원칙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안전성의 가치를 추구함.
 - 공공성 : 영리추구를 배제하며, 보육은 공적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함.
 - 투명성 : 어린이집의 운영과 재무회계관리는 법령과 정부 지침, 시범사업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전과정이 부모와 사업관리주체에 공개되어야 함.
 - 개방성 :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과 보육과정 운영은 부모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육과정 및 주요 운영과정에 부모 참여를 권장함.
 - 안전성 :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의 안전 관리, 급간식, 위생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친환경 보육, 열린어린이집’을 지향함.
 - 영유아 중심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보육과정 운영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이루어져야 함.
 - 놀이 중심 :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고 놀이를 통해 성장하므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되, 교사 주도의 교수 학습보다는 영유아 스스로 이끄는 놀이 활동이 주가 되도록 함. 부모가 비용 부담하는 특별활동을 최소화함.

- 친환경 보육 :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에게 무해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재로 마감되어야 하며, 급간식 식재료와 교재교구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제공함.
- 열린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항상 부모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다양한 부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가 보육에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함. 리모델링 시 보육실은 창문 또는 출입문 유리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고, 부모를 위한 공동공간을 설치함. 부모총회, 반별 부모모임,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의 일일교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부모참여 기회를 제공함.

나. 운영시간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부모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없음.

다. 초과보육 금지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정부의 반 편성 기준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 총정원 이내라 하더라도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음. 이는 초과보육이 해당연령 학급 교사의 근무강도를 높이고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키며 영유아 안전사고 위험과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부정적 보육환경을 초래하기 때문임.

라. 취약보육 실시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1개 이상의 취약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우선적으로, 시범 어린이집 선정 후 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부모 요구가 높은 취약보육을 실시함. 일차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밖에 재원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문화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열린어린이집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함. 열린어린이집의 ‘열린’이란 부모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한다는 뜻으로,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구성 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뜻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5). 즉,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표방하며, 부모에게 항상 열린 어린이집,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함.
- 열린어린이집의 목적은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 증진과, 영유아 가족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영유아 가족과 어린이집의 상생적 협력을 지향함. 열린어린이집의 특성은 공간의 개방성, 부모참여의 자발성, 참여 활동의 일상성, 참여 수준의 다양성, 운영의 융통성임(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5).
- 이와 같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우선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 보육실 내부의 보육활동을 관찰하기 쉽도록 창 또는 보육실 출입문 유리창 등을 설치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부모 간 또는 부모와 교직원 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을 설치함. 공용공간에는 긴 의자나 소파, 책장이나 협탁 등을 비치하여 안락한 공간으로 꾸미고 부모가 읽으면 좋은 도서나 양육정보를 담은 소책자, 음료 등을 비치함. 또한 어린이집 현관과 공용공간에는 넓은 게시판을 두고 어린이집 반별 보육활동에 관한 계획, 안내문, 식단, 공지사항 등을 게시함.
- 어린이집 지정 후 부모 수요 조사를 통해 부모가 듣고 싶어 하는 부모교육 주제와 참여 가능한 시간, 부모참여 가능한 활동 형태와 시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간 보육계획 및 부모참여계획 수립에 반영함. 결정된 사항은 반별 부모모임 또는 전체 부모회를 개최하여 안내함. 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부모교육 이외에 가능한 부모참여 형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보육도우미 : 급식 도우미, 현장학습 도우미, 놀잇감 세척 등에 참여

- 일일교사 : 부모의 직업, 재능 기부를 활용한 일일 교사로 보육활동에 참여 (예: 치과의사의 치아건강교육, 동화구연가의 동화 수업, 종이접기, 유아체육 등)
 - 부모 동아리 : 부모가 동아리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모여 활동함으로써 보육활동을 지원함(예: 양말인형 만들기 동아리, 텃밭 가꾸기 동아리, 목공예 동아리, 벽화그리기 동아리 등). 이밖에 부모 학습동아리나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도 있음.
- 공보육어린이집은 부모와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함. 알림장, 가정통신문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 결과를 안내하고, 부모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항시 수렴하며, 반별 부모모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참여를 적극 권장함.
- 이와 같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모의 자발적 참여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 시 열린어린이집 운영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며, 부모를 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이며 협력자로서 인식하도록 함. 부모에게는 공보육어린이집 개원 직후 실시하는 부모 오리엔테이션과 신학기 시작 전 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소개할 때 열린어린이집 운영 원칙과 부모의 역할, 어린이집과 부모 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공보육어린이집은 한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감사편지, 활동사진을 담은 엽서, 연말 전체 부모모임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개인여건 상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부모들이 심적 부담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함.
- 공보육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열린 어린이집, 지역사회와 함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보육과정 운영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보육활동을 진행함. 예컨대, 주민센터, 도서관, 시장, 박물관 등을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는 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초빙하여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소아과, 보건소, 치과 등과 연계한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

한 안전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할 있으며, 영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기를 수 있음.

바. 급식관리 및 물품구매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설치 지역)를 통하여 엄선된 식단을 사용하고, 급간식 식자재는 가급적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 추후 권역 내 공보육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면 식자재 공동구매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어린이집별 필요수량을 주문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의 교재 및 교구와 가구 등 기자재 구입 시에도 영유아에게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
- 동일 권역 내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개소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교재 교구, 놀잇감, 도서 등을 공보육어린이집 간에 순환 사용하는 공유경제 방식을 적용함.
- 식자재와 교재교구, 기자재 등 물품 구입 시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총 구매액의 5% 이상 구매하도록 함.

※ 근거 조례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사.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리모델링 및 안전관리 컨설팅

-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함. 친환경·무독성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개원 초기 및 매 분기별 시설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함. 어린이집 전기, 화재, 가스, 실내 설비 및 보육실 환경에서의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소방서, 전문점검기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1회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함.

○ 실내공기질 검사 및 석면검사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하여 모든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면적⁶⁾과 무관하게 실내공기질 검사와 석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과 경기도청 및 부모에게 공개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아동학대 예방 및 가칭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실내외 주요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함.
-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CCTV의 모니터링과 자체 교사교육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동 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CCTV 영상정보 확인 및 학대 여부 검토,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부모, 교사 위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

6)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이행 대상은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임.

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함. 또한 위원회는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사례 및 보육교직원-부모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5. 보육교직원 관리

가.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처우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원장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서 별도 공개채용하며, 보육 교사의 경우 시범사업어린이집 선정 당시 보육교직원을 고용승계하되, 다음과 같은 처우 기준을 적용하고 직무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함.

1) 원장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원장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함.
 - 지원자격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자로서 총 보육경력 10년 이상으로 함.
 - 전형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2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함. 공보육 확충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 수상경력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함.
- 원장은 채용 확정 후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근무 이전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간 의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원장의 보수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수기준에 따르며,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확정함. 원장의 근로계약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이내로 하며, 1년 재직 후 근무평정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2) 보육교사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 다만, 시범사업 어린이

이집 선정 당시 재직 중인 보육교사는 고용 승계하되, 선정 후 리모델링을 위한 휴원 기간 동안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신규채용 시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며, 어린이집 배치 전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교사의 처우는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을 적용하며(〈표 3-5〉 참조), 재직 기간 중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실시하는 보육과정 컨설팅과 원내 교사교육에 필참하여야 함.

3) 기타 보육교직원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취사부 등 기타 보육교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 다만, 시범사업 어린이집 선정 당시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고용승계 하되, 선정 후 리모델링을 위한 휴원 기간 동안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신규채용 시 해당직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선발함. 신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배치 전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은 재직 기간 중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실시하는 컨설팅과 원내 직무교육에 필참하여야 함.

나.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1) 원장

- 원장은 채용 확정 후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근무 이전 30시간 내외의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간 20시간의 직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실시하는 컨설팅 시수를 연간 의무교육 시수에 포함할 수 있음.

〈표 3-5〉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2,702,920	1,891,910	18,804,240	1,567,020	15,445,680	1,287,140
2	23,316,360	1,943,030	19,348,680	1,612,390	15,900,720	1,325,060
3	24,077,400	2,006,450	19,945,560	1,662,130	16,549,800	1,379,150
4	24,798,120	2,066,510	20,571,960	1,714,330	16,894,800	1,407,900
5	25,525,320	2,127,110	21,204,000	1,767,000	17,266,560	1,438,880
6	27,126,960	2,260,580	22,661,040	1,888,420	18,050,400	1,504,200
7	28,086,720	2,340,560	23,621,400	1,968,450	18,840,240	1,570,020
8	28,713,960	2,392,830	24,053,520	2,004,460	19,149,240	1,595,770
9	29,542,200	2,461,850	24,710,280	2,059,190	19,779,840	1,648,320
10	30,378,360	2,531,530	25,421,880	2,118,490	20,391,000	1,699,250
11	31,427,760	2,618,980	26,345,760	2,195,480	21,214,080	1,767,840
12	32,345,280	2,695,440	27,139,080	2,261,590	21,933,000	1,827,750
13	33,039,120	2,753,260	27,833,280	2,319,440	22,528,080	1,877,340
14	33,783,000	2,815,250	28,452,840	2,371,070	23,147,640	1,928,970
15	34,526,640	2,877,220	29,073,000	2,422,750	23,742,960	1,978,580
16	35,476,560	2,956,380	29,948,160	2,495,680	24,543,840	2,045,320
17	36,195,480	3,016,290	30,592,800	2,549,400	25,138,800	2,094,900
18	36,988,800	3,082,400	31,237,560	2,603,130	25,758,720	2,146,560
19	37,757,400	3,146,450	31,881,960	2,656,830	26,353,800	2,196,150
20	38,426,640	3,202,220	32,526,480	2,710,540	26,973,240	2,247,770
21	39,557,880	3,296,490	33,583,320	2,798,610	27,955,800	2,329,650
22	40,301,760	3,358,480	34,227,960	2,852,330	28,526,160	2,377,180
23	40,970,880	3,414,240	34,798,440	2,899,870	29,096,160	2,424,680
24	41,640,240	3,470,020	35,442,960	2,953,580	29,641,680	2,470,140
25	42,384,000	3,532,000	36,037,680	3,003,140	30,236,520	2,519,710
26	43,078,200	3,589,850	36,632,640	3,052,720	30,781,920	2,565,160
27	43,722,840	3,643,570	37,153,320	3,096,110	31,253,160	2,604,430
28	44,392,080	3,699,340	37,723,320	3,143,610	31,798,560	2,649,880
29	45,011,880	3,750,990	38,343,120	3,195,260	32,319,000	2,693,250
30	45,705,960	3,808,830	38,888,640	3,240,720	32,864,400	2,738,70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306.

- 원장 대상 사전직무교육(30시간 내외)의 내용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의 이해, 아동 인권 및 젠더 감수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재무회계교육 등을 포함하며, 강의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함.

2) 보육교사

- 보육교사 대상 사전직무교육(20시간 내외)의 내용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의 이해, 아동인권 및 젠더 감수성,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이해, 영유아 행동관찰 및 평가 등을 포함하며, 강의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함.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재직 기간 중에 법정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외에도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실시하는 보육과정 컨설팅과 원내 교사교육에 연간 20시간 필참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가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계획 및 근무평가 등에 반영함.

3) 기타 보육교직원

- 기타 보육교직원 대상 사전직무교육(20시간 내외) 내용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의 이해, 아동인권 및 젠더 감수성, 기타 직무관련 과목으로 구성함. 또한 보육교직원은 재직 기간 중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이 실시하는 컨설팅과 원내 직무교육에 필히 참여하여야 함.
 - 기타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가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 및 근무평가 등에 반영함.
-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직무교육과정은 별도의 연구 과제를 통해 2016년 하반기 중 개발될 예정임. 직무교육과정 개발 이전에는 외부 위탁교육 또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주관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6. 품질관리 컨설팅 및 평가

가. 품질관리 컨설팅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시범사업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 컨설팅은 보육과정 컨설팅, 회계 컨설팅, 안전관리 컨설팅으로 나뉨.

1) 보육과정 컨설팅

- 목적 : 보육과정 컨설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계획 실행과정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여, 보육과정 실행의 전문성과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함.
- 시행주기 및 횟수 : 시범사업어린이집 개원 초기에 각 학급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이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 연간/월간/주간/일일 보육계획 및 보육일지 기록, 담임교사의 보육활동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1 대 1 컨설팅 함.
- 보육과정 컨설팅 내용
 - 반별 연간/월간/주간/일일 보육계획 및 보육활동 실제의 적절성
 - 담임교사별 보육활동 및 일과 운영의 적절성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적절성
 - 보육실의 흥미영역 구성 및 교재·교구의 적절성 등
- ※ 보육과정 컨설팅 결과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기록하며, 2회차 이후 전회 컨설팅 결과에 따른 향상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누적하여 기록 관리함. 집중적 컨설팅과 개선이 필요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원장의 장학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컨설팅 참여인력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팀장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기타 대학교수 등 보육전문가

2) 회계 컨설팅

- 목적 : 회계 컨설팅은 투명한 회계 관리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원장의 회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함.
- 시행주기 및 횟수 : 시범사업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
- 회계 컨설팅 내용
 - 정기컨설팅 : 예산 대비 집행의 적절성, 회계 처리의 적절성 등을 회계서류 및 증빙을 확인하여 점검함. 아울러 보조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함.
 - 이밖에 시범사업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인력과 회계컨설팅트에 의한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 컨설팅 참여인력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실무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트, 회계 전문가

3) 안전관리 컨설팅

- 목적 :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함.
- 시행주기 및 횟수 : 시범사업어린이집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
- 안전관리 컨설팅 내용
 - 개원 전 :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의 안전성 진단
 - 분기별 컨설팅 : 실내공기질 및 수질 안전성 검사,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위생상태 점검, 식중독예방을 위한 조리실 위생상태 점검,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구조물 및 주변 환경 안전진단 등
 - ※ 실내공기질 검사 및 컨설팅은 도비 지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연계
- 컨설팅 참여인력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실무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관계자, 보건환경 전문가 등

나. 운영 성과 평가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과 재정효율성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함. 평가 방법은 분기별 1회의 운영 성과 평가회와 부모 만족도 조사에 의함.

1) 운영 성과 평가회

-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은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개별어린이집의 운영계획 대비 실적, 시범사업 운영원칙 부합성 여부, 재정 효율성, 컨설팅 등 품질관리 결과 등을 검토하고,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참여기관 및 참석자 :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무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보육분야 연구자,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장 및 직원, 공보육어린이집 원장

2) 부모 만족도 조사

-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야 함.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이와 같은 소기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의견을 수렴함.
- 조사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
- 조사대상 : 조사시점에서 어린이집 재원 원아의 부모
- 조사내용 :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환경, 보육 철학 및 보육프로그램,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 급간식의 질, 보육비용, 부모참여 및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등

○ 조사방법 : 설문지(온/오프라인 방식)

※ 시범사업 어린이집 재원아동 부모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를 득한 후, 공보육 시범사업추진단에서 부모에게 웹조사 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

○ 조사결과 공개 : 자료 분석 후 주요 결과를 보육교직원과 부모에게 공개함. 운영 성과 평가회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 응답이 높은 항목을 검토하고,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차기 평가회에서 성과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제 4 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2. 정책제언

1. 논의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기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드는 막대한 재정 소요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한계,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보육 영유아 수 감소, 그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부실화 등 경기도 보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경기도 재원으로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원장 및 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지역의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부모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김미정, 2015).

경기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는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1,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주체 및 운영 지원기준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며, 기존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 어린이집 입차 후 운영비 지원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공공형어린이집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과 보육교사 급여 수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과 유사하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과정 컨설팅 및 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력풀 구축 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은 국공립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안전성을 추구하며,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 친환경보육, 열린어린이집에 중점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앞으로 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시범사업 운영방식의 지속가능성과 강점, 한계점, 사업 확대 시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 과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과제는 시기적으로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진행됨에 따

라 단기과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업무 매뉴얼의 상세한 내용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보다 상세하게 보완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제안된 업무 매뉴얼 관련 사항 이외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 사업안내 및 기타 관련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주체들과 보육 현장, 그리고 보육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 혹은 향후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현안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 어린이집 건물 확보를 위한 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예산상의 한계로 어린이집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이 어린이집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필연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시범사업 기간 이후 경기도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여도 소유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면, 기존에 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소유주가 다시 어린이집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시범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그간의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만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서 오는 불가피한 문제점이지만,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우수한 보육교직원에 의해 가능하며,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 보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범사업계획에 의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수준은 공공형어린이집과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상당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1년차에는 현격한 처우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시범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수준이 일정할 경우 매년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 고용승계하고 이후 사전직무교육, 정기적인 보육과정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 일부 교직원에 따라서는 사후품질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인건비 상승의 인센티브 효과를 상쇄할 만한 부담이 되거나 이직 요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범사업어린이집의 경우 변경인가 시설이므로, 기존 평가인증 통과시설이더라도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시범사업 개시 이후 신규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다. 장시간 근무,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휴게시간 및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과 같은 보육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급여수준과 추가인력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사업의 지속성 및 확대가능성과 직결되는 재원 확보 계획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기도 보육재정 규모가 2조 규모를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는 경기도 보육정책에 막중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재원을 100% 부담하여 진행될 예정이지만, 향후 연차적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역시 보육재정 급증에 따른 압박으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재원 확보 계획이 별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인 회계 컨설팅 및 상시적인 상담,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재무회계 업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개별 어린이집 자체적인 회계처리 업무 역량의 편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시범사업 어린이집 개소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인력과 재원의 한계로 투명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현안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선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책제언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안정성 확보 위한 개선 방안, 회계지원시스템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중장기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가. 사업의 안정성 확보 위한 개선 방안

시범사업에서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임차 방식으로 어린이집 시설물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 이후의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사업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면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과제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를 통하여 임대차 방식의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점 등을 추적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유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보육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과 기자재 구입 예산을 감안할 때 2년 미만의 사업 기간 후 종료하는 것은 재정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이 되므로, 가급적 본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공공보육시설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의 협의 및 약정 가능한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회계업무의 편의성과 운영 투명성을 위한 회계지원시스템 도입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결과, 운영 개선과제로서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 의무화가 추진되어야 함(서문희 외, 2014; 유해미 외, 2015)이 지적된 바 있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도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 재무회계시스템인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을 선정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시범사업에서도 어린이집 자체 회계관리의 편의성 제고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어린이집 회계지원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회계지원의 측면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회계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과 회계교육컨설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안(백선정, 2015)된 바 있다.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 운영의 편의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의 회계 업무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역시 서울시처럼 회계지원시스템

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의 개발과정 및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기도형 어린이집 회계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에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등에 대한 시범 운영 및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전 어린이집에 확대 보급해야할 것이다.

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은 곧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현재의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수준으로 처우가 설계되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기준 1호봉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에서도 향후 개선과제로 보육교직원의 급여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운영 재원이 고정적인 상황에서 매년 교직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압박요인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나, 공공형어린이집 수준의 운영비 지원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게 된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과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 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후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교사 처우수준에 대한 향상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밖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추가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 제언(유해미 외, 2015)되었고,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의 경우 인가 직후 평가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보조교사 지원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추가 인력 지원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조교사 또는 비담임교사, 혹은 최소한 보육도우미 등과 같은 추가인력 지원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라.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원 확보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 시범사업의 향후 확대여부는 시범사업 운영과정을 통해 사업 방식의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본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자원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적 업무 매뉴얼의 개발에 있어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시설 확보를 위한 보증금 및 임차료 또는 매입예산, 개소당 연간 운영비 지원예산 등을 기초로 하여, 연차적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 투입규모에 상응하는 경기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성공여부와 별도로,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원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어야만 향후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자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별도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기도 (2016). 「2016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
- 김미정 (2015). 「경기도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 김미정 · 우수정 · 박진아 (2015). 「경기도 보육 수급전망 및 정책방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미정 · 정혜진 · 박은미 (2015). 「경기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종해 (200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전망과 한계”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나병현 (2004). “공교육의 의미” . 황원철 외(편), 「공교육: 이념·제도·개혁」 . 원미사.
- 박은미 · 김은희 · 최주혜 · 진보라 · 조현옥 · 임보라 · 김보람 (2015).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백선정 (2015).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지원 시스템 도입방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5).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 보건복지부 (2016). 「201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5).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 서문희 · 양미선 · 도미향 · 송신영 (2011). 「공공형 ·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 이혜민 · 이원선 (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시 (2016). 「2016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 안현미 · 김송이(2011). “한국의 보육공공성과 제3의 보육체계” .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07~137.
- 안현미 · 박소영(2010).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현미 · 백은주 (201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현미 · 백은주 (2015). “한국의 보육 공공성과 ‘제3의 보육체계’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 12(1), 107~137.
- 양미선 · 정주영 · 임지희 (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 김아름 · 박기원 (2015).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 육아정책
연구소.
- 이미정 (2009). “보육재정 지원정책과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한국보육학회지」
9(10), 77~89.
- 정혜진 (2015). 「경기도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6-01

**경기도 공보육 확충사업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

발 행 인 한 옥 자

발 행 일 2016년 4월 30일

발 행 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69

홈페이지 www.gfwri.kr

인 쇄 아이콘커뮤니케이션

ISBN 978-89-6432-210-9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